

# 고용기회평등 가로막는 군복무가산점제도 폐지하라 !

## - 여성 및 장애인의 공직진출 가로막는 군복무가산점은 폐지되어야 한다.

IMF 경제위기 이후 여성고용이 급속히 감소(여성경제활동인구 98년 10월 대비 2.8%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성차별적 여성 우선해고와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으로 정규직 여성고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시험을 거쳐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에서조차 군복무가산점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해 여성공무원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결과 98년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전년 35%에서 21%로 현격히 낮아짐으로써 여성의 공직진출이 한층 어려워졌다.

이렇게 열악한 여성고용현실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 군복무가산점제도는 신체적 조건으로 불가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여성과 장애인의 직업선택을 제한하고, 취업 및 공직진출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음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공무담임권(제25조)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업무수행능력이 아닌 병역이행 여부로 채용기준을 삼는다면 능력·성과급 제도가 확산되는 기업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 - 군복무가산점제도는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7급 및 9급 공무원채용 시험의 경우 합격점이 평균 만점에 가까워, 불과 몇점차로 합격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로 3점 또는 5점을 가산하는 것은 만점이 넘는 결과를 만들 뿐 아니라,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여성과 장애인 및 군미필자는 높은 점수를 받고도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주관한 보건직 9급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96점의 높은 점수를 받고도 여자응시생이 불합격한 반면 86.5점에 자격증 가산점(5점)에 군가산점(5)까지 얻은 남자응시생이 합격하였다. 군가산점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군미필자인 여성과 장애인은 균등한 응시기회에서 사실상 배제됨으로써 고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게 될것이다.

## - 군복무가산점제도 위헌 판결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군복무를 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단 그방법은 또 다른 차별을 낳는 방식이 아니라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인 범위내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 풍토 또한 엄격한 병역법 적용과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의식의 형성 등으로 달성해야 한다.

작년 98년 10월 7급 공무원시험을 보았거나 준비중인 5명의 여성과 1명의 장애인이 「제대군인지원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군복무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지길 촉구한다. 또한 남녀평등고용을 선도해야할 정부가 공직부문에 군복무가산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고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임을 시인하고 군복무가산점제도 재검토를 촉구한다.

1999. 3. 7.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